

평창군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7. 4. 10 (화) 함명섭의원외 5인
- 나. 회부일자 : 2007. 4. 23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07. 4. 23(월) 제13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7. 4. 23) 상정·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함명섭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중 국내여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여비지급기준 「별표1」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나. 주요골자
 - 제4조와 관련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함(안 별표1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이상진)

- 가.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에서 국내여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여비지급기준 「별표1」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나.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평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와 [별표 1] 비교 1호의 "출석"을 "출장"으로 수정하였음.
- 다. 검토결과
 -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: 평창군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.

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7년 월 일
제 출 자 : 함 명섭 의원외 5인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국내여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여비지급기준 「별표1」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제4조와 관련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함(안 별표1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

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1] 비고 1호의 "출석"을 "출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[별표1]</p> <p>비고 : 1.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<u>출석</u> 및 여행(군내에서의 <u>출석</u> 및 여행을 말한다)이나 <u>출석</u>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2. 생략.</p>	<p>[별표1]</p> <p>비고 : 1. -----출장 -----출장-- -----출장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생략.</p>